

강원도립대학교 교원 해외연수규정

(제정) 2001-04-26 규정 제111호

(개정) 2010-05-03 규정 제232호

(개정) 2016-04-25 규정 제397호

(개정) 2016-02-21 규정 제43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 교원의 학술연구, 수학, 파견, 연수 등(이하 “해외연수”라 한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5.>

제2조(인원 및 기간) 해외연수 인원은 재직 교원의 10% 이내로 하되, 각 과별 1명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연수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과 해외 기관에서 초청에 의한 국외 연수인 경우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3월 미만의 단기해외연수는 방학기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자격조건) 해외연수를 하고자 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대학교에 2년 이상 재직한 조교수 이상<개정 2012.10.15.>, <개정 2016.4.25.>
2. 본 대학교 재직 중 최근 5년 이내 국외 연수 사실이 없는 자 <개정 2016.4.25.>
3. 교내·외 학술연구 수혜자의 경우는 수혜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지 아니한 자
4. 본 대학교와 학술 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에서 연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선발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개정 2016.4.25.>

제4조(선발기준) 해외연수 대상자의 선발은 전 조의 자격조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 되어야 한다.

1. 학위논문 또는 연구 과제를 위해서 자료수집의 필요가 있는 자
2. 해외에서 학위취득을 하고자 하는 자
3. 외국인과의 공동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4. 학사업무를 위한 자료수집이 필요한 자
5. 보직 업무수행으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자
6. 국제기구 또는 학술기관에 파견근무를 하고자 하는 자
7. 기타 대학발전을 위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5조(신청) 이 규정에 의하여 해외연수를 하고자 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연수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소속 학과 동의서 : 별지 제2호 서식
3. 연구기록부 : 별지 제3호 서식
4. 연수계획서 : 별지 제4호 서식

제6조(심사) 신청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선정 심사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평가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7조(연수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1. 본 대학교 재직기간 동안 3회에 한한다. <개정 2016.4.25.>
2. 자비 및 외부지원(휴직상태)에 의한 연수는 회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동일 학과 소속 교원이 해외연수 중이거나 연수 종료 후 1년 이내인 경우
4. 비리 및 징계에 연루된 자
5. 기타 강의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8조(해외연수의 구분) 해외연수는 그 목적과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학술연구 또는 수학 등을 목적으로 2개월 이상 1년 미만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단기연수로 한다.
2. 학위취득 또는 기타 목적으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장기연수로 한다.

제9조(인사관리) 1. 단기연수일 경우에는 출장 및 파견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 연수일 경우에는 휴직을 원칙으로 한다. 휴직 사유가 발생한 교원은 소속 학과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와 휴직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휴직원 ‘별지 제1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단기연수로 파견된 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외체류 전체기간이 1년을 초과 할 시 휴직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연수시기) 연수 시기는 연구기관과 본 대학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정하며 여권과 비자 신청 등 기타 사항은 개별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5.>

제11조(선정자 제출서류)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출국예정일 4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연수 계획서 : 별지 제6호 서식
2. 해외연수 초청장(국문번역본 포함) 또는 관련서류
3. 보강 계획서 : 별지 제7호 서식
4. 서약서 : 별지 제8호 서식

제12조(기간연장) 해외연수 기간 중 연수계획서 변경, 연구의 미완성 또는 기타 사유로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연수기간 만료 2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해외연수 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조기 귀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간 연장 사유서 : 별지 제9호 서식
2. 변경된 연수계획서 : 별지 제10호 서식
3. 기타 연장에 관련된 증빙서류
4. 본 대학교 소속 학과의 동의서 <개정 2016.4.25.>

제13조(보고의무) 연수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체재지 도착 후 30일 이내에 체재지 도착보고서 : 별지 제12호 서식
2. 해외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신고서 : 별지 제13호 서식
3. 1년 이상 해외연수자는 연수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국제학술지는 3년내)에 연구결과 논문을 전국규모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4. 예채능 교원의 경우에는 논문을 게재하거나 연수기간 중 또는 연수기간 종료 후부터 2년 이내에 공연, 전시 등의 발표회를 개최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연구기간 중 연구기관 또는 연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총장에게 변경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4조(연수자 준수사항) 1. 연수자는 본 대학교 교원으로서 긍지를 갖고 연구활동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5.>

2. 사전 연구계획서상의 내용과 승인한 연구기관에서 승인 분야를 연구하여야 하며, 연구기간이 끝나면 즉시 복귀하여야 한다.

3. 연구논문 게재 시 연구비 지원처의 표시 : 학술지 게재 시 논문 첫 페이지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 국문 표기 시 : 이 논문은 ○○○○년도 강원도립대학교 교수 해외파견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개정 2016.4.25>

· 영문 표기 시 : This is paper was accomplished with reserarch fund provided by Gangwon state university. support for ○○○○ faculty research abroad. <개정 2016.4.25.>

제15조(제재조치) 연구지원비를 받아 연수중인 자가 정해진 연수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보고의무 제14조의 연수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연구비 회수 등 기타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

제16조(해외연수자의 복무의무) 1. 단기 연수자는 귀국 후 본 대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5.>

2. 장기 연수자는 귀국 후 본 대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5.>

제17조(기타사항) 해외연수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시 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8조(보직)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2개월 미만의 해외연수에 관하여는 관계법규에 의거 총장이 결정한다.

부 칙(2001. 4. 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5.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25.)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2. 21.)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4.25.> <개정 2017.2.21.>

해외연수 신청서

소속		직명		성명		생년월일	
연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개월)					
연수국 및 기관		국 가 명		기 관 명		연구여건	
본교임용일자							
해외 연수경력 (6개월 이상)		기 간		연수국가 및 기관명		연 수 목 적	
동의사항 (학과장, 학과교수 날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학과장 (인)					
위와 같이 해외연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학과교수(장) 동의서

1. 연 수 자

- 소 속 :
- 직위(직급)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2. 연수신청국 및 연수기간

- 연수 신청국 :
- 연 수 기 간 :

3. 연수목적

4. 기대효과

5. 학과장 및 학과교수 의견

학과교수(장) : 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7.2.21.>

연구기록부

소 속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세부전공				최종학위	(취득대학 :)		
경 력 (본교재직 경력)	기 간	근무처(직명·보직명)		기 간	근무처(직명·보직명)		
연 구 실 적	발표일	발표지 (장소)	연구(발표) 민 원	제 목		비 고	

※ ① 연구실적의 범위는 본 교 재직 중 출간된 주요저서, 학술논문집에 게재된 논문, 전국 규모의 학회에서 발표된 학술논문, 학술용역 보고서에 한하며, 예체능계의 경우 위의 수준에 준하는 전시회나 연주회

② 비고란은 저서, 학술연구논문, 보고서 등으로 구분 표시

③ 연구실적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연 수 계 획 서

연 수 계 획 요 약	
1. 연수 과제명	
2. 연수목적 및 필요성	
3. 연수내용 및 방법	
4. 연수내용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동향	
5. 연수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6. 기타 수행사항	

※ 서식의 구분표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별지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4.25.>

교수 해외연수 선정 심사표

심사 대상자 소속학과명 : 직급 : 성명 :

1. 대학 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총장이 평가) - 30점 (득점 : 점)

※ 총장이 재량에 의거 부여

2. 교수업적평가점수(교수 업적평점표 참조) - 100점 (득점 : 점)

※ 재직 기간 중 평균

3. 강원도립대학교에 장기 재직자 - 10점 (득점 : 점)

(제1안)

구 분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점 수	4	5	6	8	10

(제2안)

본교 부임이후 근속기간 1년당 2점을 부여한다. 단,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며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4. 연구비 지원형태 - 10점 (득점 : 점)

구 분	국외지원	국외+국내지원	국내지원	대학내 연구비
점수	10	8	6	4

5. 총 득점

합계점수	
평 가 자	(인)

해외 연수 계획서

1. 연수계획 요약

연 구 과 제 명				
연수동기 및 배경				
연 수 기 간				
연수국가 및 지역				
연수대학(기관)명				
연 수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공동 연구자			
	연수 경비 (총연구비)			
연수경비부담기관				
기 타				

※ 작성요령

- 1) 연수국의 ()는 경유국(항공편 이용에 따른 단순 경유국을 말함)을 기재
- 2) 소속은 과까지 기재
- 3) 3인 초과인 경우 별지 작성

가. 연수목적

- #### 나. 연수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연수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다. 연수경비

성명	계	항공료	체재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숙박비	식비			
		\$	$\$ \times \text{일}$ $= \$$	$\$ \times \text{일}$ $= \$$	$\$ \times \text{일}$ $= \$$	\$	\$	\$

※ 국외여비 규정에 의거 산출(2등 탑승료로 계산)

3. 자료수집계획

○ 연수계획

- 소속기관 :
- 연 수 자 :
- 연수목적 :
- 연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

○ 자료수집목록

작 성 자 (인)

보 강 계 획 서									
소 속	학과			직위		성명			
보강사유									
결강기간	년 월 일 ~ 월 일(개월 일간)								
위 본인은 상기와 같이 결강하게 되어 본인이 소속한 학과장이 확인을 얻어 아래와 같이 보강코자 계획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강 계 획									
결 강					보 강				
교과목명	수강대상	기간	요일	교시	기 간	요일	교시	강의실	담당교수
(별지사용가능) 년 월 일 제출자 : (인)									
확 인					결 재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0.5.3.> <개정 2016.4.25.>

서 약 서

본인은 강원도립대학교 교원해외연수규정에 의거 해외연수교수로 선정된 자로서 연구기간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음을 본인의 소속 학과 교수(장)의 연서보증으로 서약합니다.

1. 나는 본교의 해외연수교수로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충실히 연구에 전념하겠습니다.
2. 나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당초 결정한 연구기관이나 연구 분야를 변경하지 아니하겠습니다.
3. 나는 국외 체재 중 연구 불성실, 연구기관의 규칙위반, 체재국의 법률위반, 교수신분 이탈 등으로 해외연구를 중도에 중지하게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진 귀국 하겠습니다.
4. 나는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연구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겠습니다.
5. 나는 지급된 연구비를 연구목적만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6. 나는 국외 생활 중 우리의 고유문화와 역사, 그리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널리 소개하며 국위선양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7. 나는 국외 체재 중 국가의 비상사태 등 특별한 사정으로 중도 귀국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겠습니다.
8. 나는 체재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귀국하여 소속 대학에서 성실히 근무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지급받은 경비 전액의 반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성 명 : (인)

소 속 학 과 장 : (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기간 연장 사유서

1. 연수자 인적사항

소 속 :

직 급 :

성 명 :

2. 연수국가 및 연수기관

3. 당초 연수기간

4. 변경기간

5. 변경(연장) 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자 (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6.4.25.>

변경된 연수계획서

1. 인적사항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2. 당초 연수 계획

3. 변경사항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4. 변경사유

위와 같이 연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일시·조기귀국 보고서

소 속	대학	학과	직급		성명	
해외연수 국가명			연 수 기 관 명			
일시·조기귀국 기간						
일시·조기귀국 사유						

※ 일시 및 조기귀국 인정기간(년14일)을 초과할 경우에 작성 제출.

붙임 1. 일시·조기귀국 입증자료 1부

년 월 일

확 인(소속 학과장)

(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0.5.3.> <개정 2016.4.25.>

체재지 도착 보고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한글) (영문) (한자)

상기 본인은 년도 교원으로 파견되어 해외연수 교수로서 승인된 연구기관에 아래와 같이 도착하여 종사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연수(출국) 년월일				
연구기관 및 도착 년월일				
연수 체제지 연락처	주 소			
	T E L		FAX	
	E-mail			
연구기관 연락처	주 소			
	T E L		FAX	
	E-mail			
연구종사 부서				
공동연구 관련자 성명				

이
의
년

파견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 ※ 1. 본 신고서는 현지 도착 후 본 대학교에 15일 이내에 도착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외 파견자는 현지 주재 한국 공관에도 7일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소가 변경될 경우 즉시 총장 및 주재 한국 공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신고서는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복 귀 신 고 서

담 당	처 장	총 장

소 속	과	성명		생년월일	
연구 과 제 명					
당 초 연 구 예 정 기 간	덧붙임 : 1. 출입국 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1부 여권상의 출입국 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해외 연수의 경우 2. 기관장 확인서(연구기관장 발행)1부. 국내파견의 경우				
실제 연구기간					
비 고					

※ 교학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6.4.25.>

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2호 및 강원도립대학교 교원인사
관리규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휴직기간 :

○ 휴직사유 :

성 명 : (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